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 등에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며, 화재·폭발,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대상에 추가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215133호, 2026. 2. 19. 공포, 6. 1.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 현황의 공시 대상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연간 건설공사 금액 1,20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주로 정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이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해촉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하며,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대상을 산업재해 원인조사 결과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1년 이내 2회 이상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대상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
2. 연간 건설공사 금액 1,20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주

② 법 제10조의2제1항제6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고사망 현황(법 제63조에 따라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도급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67조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설발주공사에서 발생한 사고사망 현황(「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건설공사발주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항제1호”를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대표가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중에서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호 중 “제32조제1항제1호”를 “제3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제35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49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장

제5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9조제1항제3의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에 대한 원인조사 결과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1년 이내에 2회 이상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말한다.

별표 1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비고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
(제2조제1항 관련)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나. 국제 및 외국기관	제10조의2
비고: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둘 이상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은 모두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호에 가-2목, 머-2목부터 머-6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

4.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위반
가-2. 법 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1호의2		1,000	1,000	1,000
머-2.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2호의2		500	700	1,000
머-3.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150	300	500
머-4.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	법 제175조제5		150	300	500

반하여 근로자대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험 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항제1호				
며-5. 법 제36조제4항 전단 을 위반하여 위험성평 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 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 항제1호	1) 실시 일정과 결과를 모두 알리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2) 실시 일정 또는 결과 중 어느 하나를 알리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며-6. 법 제36조제5항을 위 반하여 위험성평가 결 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 6항제2호의2		50	150	300

부 칙

이 영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35의 개정규정(제4호 가-2목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027년 1월 1일
2.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사업장): 2028년 1월 1일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2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대상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u> <u>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u> <u>2. 연간 건설공사 금액 1,20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주</u> <u>② 법 제10조의2제1항제6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u> <u>1.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고사망 현황(법 제63조에 따라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도급인인 경우에 한한다.)</u> <u>2. 법 제67조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설발주공사에서 발생한 사고사망 현황(「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u>

제32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 협의체 구성·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해당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분회 등 명칭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해당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2. ~ 4. (생략)

<신설>

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건설공사발주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32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①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

<삭 제>

2. ~ 4.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대표가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업무(제8호는 제외한다)로 한정하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로 한정한다.

1. ~ 10. (생략)

③·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중에서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
-----.
제2항-----

-----.

1. ~ 10.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⑥ ----- 제5항-----

-----.

제3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

우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신 설>

2. ~ 4. (생략)

제49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1. ~ 3. (생략)

<신 설>

4. (생략)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생략)

-----.

1. -----
----- 제32조제2항-----

2.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제35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에게 해당하는 경우

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제49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5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장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① (현행 제6호 외의 부분과

<신 설>

같음)

② 법 제49조제1항제3의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에 대한 원인조사 결과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1년 이내에 2회 이상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말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8997